

증 언 거 부 사 유 서

사 건 2000고단 000호 절도 피고인 0 0 0

증 언 거 부 사 유

위 사건에 관하여 위 증인이 20〇〇. 〇. 〇. 제○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나, 위 증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증언이 되어,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증언을 거부합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증인 🔲 🔲 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사건계속 법원			www.klac.c
거부권자	※ 아래(1)참조			
제출부수	사유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148~149조	
사 유	※ 아래 (1)참조			

※ (1) 거부권자 및 사유

구 분	거 부 권 자	사 유
148조	모든 사람	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1.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.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
149조	회계사, 세무사, 대서업자,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사, 약	단,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